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3. 5.
- 회부일자 : 2024. 3. 13.
- 상정일자 : 2024. 3. 14.

2. 제안이유

- 「주차장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, 임산부·영유아·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(안 제10조의3제1항)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(안 제10조의3제2항)
-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(안 제10조의3제3항)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위치(안 제10조의3제4항)
-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 및 표시(별표 5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주차장법」 제6조제2항은 해당 지역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맞는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10조의3(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을 신설하여 공영 및 공공기관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함.

- 설치기준: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총 5% 이상
- 이용대상: ① 임산부, ② 영유아, ③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
(대상을 동반한 사람 포함)
- 규격 및 표시: ‘붙임’ 참고

5. 종합검토의견

- 상위법에서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,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적합하고 관계 법령의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.

다만, 가족주차표지증이 부착된 차량만 해당 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의 노력이 병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규격 및 표시

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(제10조의3 관련)

일반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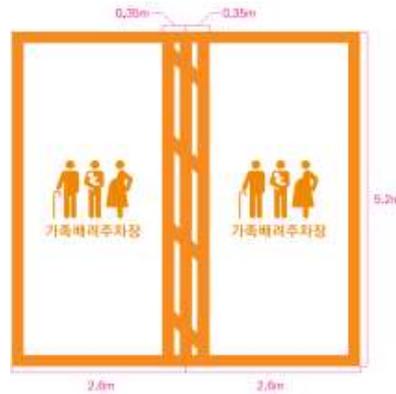
출입통로

확장형(1면)



출입통로

확장형(2면)



출입통로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5m이상 × 세로 5m이상)과 확장형 [가로 2.6m이상 × 세로 5.2m이상, 2면의 중앙여유공간 0.7m(각각 0.35m)를 사선표시] 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

가. 그림문자(가로 140cm × 세로 100cm)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

나.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